

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·관리에관한조례안

(의안번호 제81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0. 8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9 | |
|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10. 17 |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 |

2. 제정이유

-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영역 및 체력증진 등 지역정서순화 및 선진문화 의식의 함양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성군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문화체육센터 운영시설 범위(안 제4조)
-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범위(안 제5조)
- 공연장 사용허가·제한 및 취소(안 제6조 내지 제9조)
- 공연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(안 제10조)
- 입장권의 발행·검인 및 정산(안 제17조)
- 문화체육센터 중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범위(안 제19조)
-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(안 제20조 내지 제21조)
-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(안 제27조)
-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3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·관리에관한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영역 및 체력증진 등으로 지역정서 순화와 선진문화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코자함은 늦은 감이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.
- 특히, 조례안 제5조, 제19조, 제24조에 불필요한 항 설정 등 조례형식 요건상 미흡한 부분과 공연장 시설의 사용료와 체육시설 이용료의 적정성,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의 사회적 형평성,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,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조례제정이 늦은 사유는?
- 답 : 업무처리 미숙으로 늦어지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, 재차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음.
- 문 : 실내 수영장 물이 나빠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 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는데 사실을 보았는데 사실인지?
- 답 : 수영장 수질관리는 수영장 이용시간 이후인 밤9시부터 새벽5시까지 물갈이를 계속 하고 있으며, 수질이 타 지역과 비교해도 떨어진다고 볼수 없음.
- 문 : 영화상영은 오전에는 60,000원, 오후에는 70,000원, 야간에는 80,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정한 기준과 근거는?
- 답 : 공연장 사용료 산정기준은 인근 시군의 조례중 사용료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적정하게 산정하였음.

- 문 : 조례안 제24조 7호 “이용권 및 회원권은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”로 되어 있는데,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되지 않는가?
- 답 : 소비자보호법이나 상위 법령을 잘 검토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특별히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.
- 문 : 조례안 제33조 제9항 “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”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위원장의 재량행위가 포함되는 조항으로 꼭 필요한지?
- 답 :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3. 10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